



제 7834 호

경기도보

발행일 2025년 9월 9일

발행 경기도

도보는 공문으로서의
효력이 있습니다.

경기도 고시 제2025-321호

경기도 자연유산 「파주교하물푸레나무」 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조정)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자연유산 「파주교하물푸레나무」 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조정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9. 9.
경 기 도 지 사

1. 고시명 : 경기도 자연유산 「파주교하물푸레나무」 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조정)

2. 고시사항

가. 대상도지정유산

연번	지정종별	지정명칭	소재지	비고
1	자연유산	파주교하물푸레나무	파주시 다율동 986-2	허용기준 조정
2	기념물 문화유산자료 문화유산자료	노강서원 서계박세당사랑채 서계박세당묘역	의정부시 장암동 산146-1 외	허용기준 조정

나. 관련 근거

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제35조제1항제2호, 제74조
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2제2항
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의2
-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제17조, 제42조, 제63조
-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
-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
- 「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

다. 기준의 적용

- 본 허용기준은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5항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4항, 「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,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.
-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및 제7항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, 지방자치단체(시·군)에서 자체 처리함.

라. 도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: 붙임

- 경기도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gg.go.kr/>)
: 경기도소개 > 위원회 안내 > 경기도위원회 현황 > 경기도유산위원회 > 심의결과

3. 기준 시행일 : 도보 고시일

4. 연락처

- 경기도 문화유산과 : 전화 031-8008-4684 / 팩스 031-8008-4429
- 주소 : (우 16508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
- 파주시 문화예술과 : 전화 031-940-5830 / 팩스 031-940-4359
- 주소 : (우 10932)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문화예술과 (아동동)
- 의정부시 문화예술과 : 전화 031-828-4334 / 팩스 031-828-4339
- 주소 : (우 11622)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, (의정부동)

붙임 경기도 자연유산 「파주교하물푸레나무」 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조정) 각 1부.

○ (파주시) 파주교하물푸레나무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10:3이상)
1구역	○ 개별검토	
3구역	○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	
공동 사항	○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	
	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	
	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	
	○ 자연유산(보호)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	
	○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	
	○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·흙쌓기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 단, 3구역은 제외함.(지하층의 땅깍기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	
	○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.(예:1구역과 3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)	
	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.	
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		
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.		

